

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 규정

2005년 12월 14일 제정

2010년 1월 30일 개정

제 1 조 이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의 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이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상은 「대한국제법학회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」이라 칭한다.

제 3 조 대한국제법학회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고 당해연도 말에 만 40세 미만의 회원으로서,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저작자에게 수여한다.

제 4 조 수상후보자는 당해 년도 8월 31일까지 일반이사 3인 이상이 추천하고, 당해 년도 10월 31일까지 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심의회위원회가 그 중에서 1인을 선정한다. 추천받은 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직무이사회가 2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.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들의 총의로 결정하고 총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정한다.

제 5 조 신진학자(Junior Scholar)학술상심의회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본 학회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. 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직무이사회가 결의로써 정한다.

附 則

1.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한다.
2. 2005년도 1회 수상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본 학회 이사가들이 추천하고 본 규정 제3조의 회원자격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직무이사회가 선정한다.

附 則

1.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자로 발효한다.